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2년 주기 연수교육 대상에 중개보조원 추가 》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379호)

2025.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제2207379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2년 주기 연수교육 대상에 중개보조원을 추가(안 제34조제4항)	2

I.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제2207379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문진석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1. 9.

다. 회 부 일 : 2025. 1. 1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 개설등록이나 고용신고 전에 실무교육(공인중개사) 또는 직무교육(중개보조원)을 받도록 하되, 2년 주기의 정기교육인 연수교육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능력 미달 및 직업윤리 위반 등으로 중개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연수교육 대상에서 중개보조원은 제외되어 있어 중개보조원을 지속적으로 교육·관리하고 관련 중개사고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수교육 대상에 중개보조원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능력 및 직업윤리를 제고하고 중개사고로부터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3. 검토의견

가. 2년 주기 연수교육 대상에 중개보조원을 추가(안 제34조 제4항)

현행	개정안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① ~ ③ (생략)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u>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u>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 <u>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와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은 중개보조원은 해당 교육</u> ----- ----- -----.
⑤ · ⑥ (생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1)에 따르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임원을 말하며,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함)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신청일(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을 말함) 전

1) 「공인중개사법」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① 제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임원을 말하며,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는 등록신청일(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을 말한다)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
2.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①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1년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²⁾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을 포함함)을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2항³⁾에 따르면, 소속공인중개사⁴⁾는 개업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관청⁵⁾”이라 함)에게 신고된 바에 따른 고용 신고일(이하 “고용 신고일”이라 함)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상기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③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제1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공인중개사법」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2.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5) 「공인중개사법」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①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조 제3항6)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7)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1회 받아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2년 주기의 ‘연수교육’ 이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개정안은 이와 같은 연수교육 대상에 ‘중개보조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개업공인중개사등8)에 대한 교육 제도는 舊 「부동산중개업법」 개정(법률 제4153호, 1989. 12. 30. 일부개정, 1990. 1. 1. 시행)을 통해 1990년 1월 도입9)되어 ‘중개업자와 그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연 1회

6) 「공인중개사법」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③ 중개보조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8) 「공인중개사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③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하 “개업공인중개사등”이라 한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9) 「부동산중개업법」(현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중개업자등의 교육) ②제1항의 교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교육과 연수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중개업자등은 연 1회이상 일반교육을, 3년마다 1회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중개업자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업자와 그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하 “仲介業者등”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법인의 임원중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개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상의 일반교육과 3년 주기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이후 舊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법률 제5957호, 1999. 3. 31. 일부 개정, 1999. 7. 1. 시행)¹⁰⁾되면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만 1회의 사전교육 의무가 부여되고 연수교육 의무는 폐지된 바 있음.

〈표 1〉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 제도 연혁

구분	사전교육	연수교육
「부동산중개업법」 (법률 제4153호, 1989. 12. 30. 일부개정, 1990. 1. 1. 시행)		◦ 대상: <u>중개업자등(중개업자, 그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u> ◦ 교육횟수: <u>3년</u> 단위
「부동산중개업법」 (법률 제5957호, 1999. 3. 31.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대상: <u>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u> ◦ 교육횟수: <u>최초 1회</u>	폐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866호, 2013. 6. 4. 일부개정·시행)	◦ 대상 - <u>실무교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u> - <u>직무교육: 중개보조원</u> ◦ 교육횟수: <u>최초 1회</u>	◦ 대상: 실무교육을 받은 <u>개업 공인중개사</u> 및 <u>소속공인 중개사</u> ◦ 교육횟수: <u>2년</u> 단위

이와 같은 교육제도에 대하여 중개업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하며 거래사고 예방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10) 「부동산중개업법」(현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중개업자의 교육<개정 1999.3.31>)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중개업자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삭제

④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法人의 경우에는 任員을 말한다)는 신청일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하여 중개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2013년 6월 舊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1866호, 2013. 6. 4. 일부개정·시행)을 통해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도 사전교육이 의무화¹¹⁾되었고, 이와 아울러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연수교육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舊 「부동산중개업법」에서 도입(법률 제4153호)되었다가 폐지(법률 제5957호)된 바 있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연수교육은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이르기까지 재시행되지 않고 있음.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현행 교육 제도를 종합하면, 중개보조원의 경우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에 관한 3~4시간 분량의 직무교육을 받으면, 고용 이후로는 추가적인 교육 없이 직무수행이 가능함¹²⁾.

1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현 「공인중개사법」)

제34조(중개업자등의 교육)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임원을 말하며,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는 등록신청일(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을 말한다)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③ 중개보조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2)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제도는 ‘참고 1’ 참조.

〈표 2〉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 제도 주요 내용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내용·시간·비용 ¹⁾	비고 ²⁾
실무 교육	개업 공인중개사 /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전 1년 이내	· 내용: 직무수행에 필요한 <u>법률지식</u> , <u>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u> , <u>직업윤리</u> 등 · 시간: 28~32시간 · 비용: 13만원(28시간)	64시간으로 확대 추진
연수 교육		실무교육 후 2년 마다	· 내용: 부동산중개 관련 법·제도의 <u>변경사항</u> , <u>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u> , <u>직업윤리</u> 등 · 시간: 12~16시간 · 비용: 6만원(12시간)	16시간으로 확대 추진
직무 교육	중개 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 내용: 직무수행에 필요한 <u>직업윤리</u> 등 · 시간: 3~4시간 · 비용: 4만원(4시간)	8시간으로 확대 추진

주 1) 교육내용·시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항부터 제3항까지¹³⁾

교육비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기준

2)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중('25.2.20. 자체규제심사 통과)

※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가운데, 중개보조원이 사기·횡령 등에 가담¹⁴⁾하여 중개의뢰인이 피해를 입고 중개업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가능성이 발생하고 있는바,

13)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 ①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내용: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내용: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③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내용: 부동산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14)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사기·횡령 등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발생한 공제사고 406건 중 224건(55%)을 중개보조원이 유발하였으며,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2022.7.~2023.12.)’ 실시 결과 국토교통부가 수사를 의뢰한 전세사기 의심자 1,218명 중 중개보조원은 94명으로 7.7%에 해당함.

연수교육 대상에 중개보조원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은 중개보조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관리를 통해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능력 및 직업윤리를 제고함으로써 중개사고를 예방하고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되며,

이로써 강화될 공익과 제한될 사익¹⁵⁾ 간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연수교육 의무화를 통해 중개보조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으로, 세부적으로 연수교육은 중개보조원의 업무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중개보조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은 연수교육과 구분하여 ‘직무교육’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고¹⁶⁾,

15) 현재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연수교육 비용은 12시간 기준 6만원이고, 개정안에 따라 중개보조원이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중개보조원의 규모에 대해서는 ‘참고 2’ 참조.

「공인중개사법」

제5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의2.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 16) 중개보조원의 업무 범위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라 ‘법·제도의 변경사항’의 교육이 목적인 연수교육의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을 교육하는 직무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내용: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

③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내용: 부동산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이 경우 직무교육 이수 의무의 이행 확보를 위해 직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규정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¹⁷⁾.

아울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일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유사한 취지에서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는 연수교육보다는 직무교육이 보다 적합하다는 의견이므로¹⁸⁾, 개정안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78

17) 국토교통부의 수정의견은 다음과 같음.

개정안	수정안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와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은 중개보조원은 해당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④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 2. 중개보조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제5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의2.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제5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의2.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 및 직무교육 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18) 유관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은 ‘참고 3’ 참조.

참고 1

개업공인중개사등 교육제도

자료: 국토교통부

○ 관련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 공인중개사법 제45조(업무위탁), 동법 시행령 제36조(업무의 위탁)

○ 교육 운영

- 시·도지사가 2년마다 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을 심사하여 수탁기관 지정
- 수탁기관은 협회,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재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
-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14개 대학교 지정(건국대, 동국대, 서울벤처대학원대, 한국열린사이버대, 신한대, 평택대, 수원대, 대구과학대, 서경대, 명지대, 상지대, 나사렛대, 호서대, 국제사이버대) ('25.2. 기준)

○ 교육 현황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시간	교육비(협회 기준)	비고
실무교육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전 1년 이내	28~32h	28시간 130,000원	
연수교육	소속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후 2년 마다	12~16h	12시간 60,000원	
직무교육	중개 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3 ~ 4h	4시간 40,000원	

○ 교육제도 개선 추진내용(시행령 개정 중, '25.2.20. 자체규제심사 원안의결)

-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의 전문성·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교육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강화 추진
- 교육시간 확대*,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집합교육 위주의 교육 실시

* 실무교육 28~32h → 64h, 연수교육 12~16h → 16h, 직무교육 3~4h → 8h

참고 2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교육 수요

자료: 국토교통부

○ 현행 직무교육 대상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인 중개보조원
- '21~'23년 고용신고 된 중개보조원은 평균 28,054명이나, 고용관계 종료신고 후 1년 이내 고용하는 경우 교육면제 대상(7,476명, 27%)
이므로 직무교육 대상은 20,578명(73%)임

* 협회 기준 교육비 : 4h, 4만원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현황>

구 분	중개보조원 수(명)				비고
	'21년	'22년	'23년	평균	
합 계	32,995	27,739	23,428	28,054	
최초 고용신고	21,032	16,738	10,013	15,928	
고용관계 종료신고 후 1년 이내 고용신고	5,918	5,402	11,109	7,476	면제
고용관계 종료신고 후 1년 초과 후 고용신고	6,045	5,599	2,306	4,650	

○ 2년 주기 직무교육 신설시 교육 대상자 규모

- 기 고용신고 된 60,000여명*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필요, 매년 28,000여명이 고용신고됨을 감안 교육기관과 시·도지사, 등록기관(시·군·구)과 협의하여 교육병행 바람직

* 중개보조원 수 : '22년 66,630명 → '23년 61,032명 → '24 57,925명 (3년 평균 61,862명)

참고 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자료: 국토교통부

기관명	검토의견
한국공인 중개사협회	<직무보수 교육과정 별도 신설> - 연수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에 필요한 교육과정이므로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은 직무보수 교육과정을 별도로 개설하고 윤리 및 거래예방 교과목을 편성하여야 하고 2년 주기로 이수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특별시 / 경상북도	<2년 주기 직무교육 실시> - 중개행위를 할 수 없는 중개보조원이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교육 위주인 연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직업윤리 위주의 교육인 직무교육을 2년 주기로 받는 것이 바람직함
충청남도	<2년 주기 직무교육 실시, 과태료 부과 규정 추가> - 중개보조원의 고용은 수시로 변경되며 중개행위를 할 수 없는 단순 보조원임에도 2년마다 연수교육(6만원, 12시간)을 이수하는 것은 중개보조원 및 공인중개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고용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 또한, 공인중개사와 함께 교육 받는 경우 위화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연수교육 보다는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중개사고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타당함 - 직무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을 추가하여야 함
부산 동구청	<동의>